

**노숙인시설의 설치·운영 기준**(제4조제1항, 제5조제1항 및 제7조 관련)

1. 시설 설치기준

가. 노숙인일시보호시설

| 구분     |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시설 면적  | 특별시·광역시의 경우 99㎡(30평) 이상,<br>특별시·광역시 외의 지역은 50㎡(15평) 이상일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수면실 면적 | 특별시·광역시의 경우 49.5㎡(15평) 이상,<br>특별시·광역시 외의 지역은 26.4㎡(8평) 이상일 것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설비     | 수면실, 사무실, 의무실, 조리실, 화장실(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), 세탁실, 물품보관실, 급수·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|

비고

- 남녀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여성 전용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다른 노숙인시설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실을 제외한 나머지 설비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.
- 감염병환자는 격리하여 보호하여야 한다.
- 비상재해대비시설(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 및 비상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는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나. 노숙인자활시설

| 구분         | 상시 30명 이상인 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시 30명 미만 10명 이상인 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| 상시 10명 미만인 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명당 시설 면적  | 13.22㎡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.9㎡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.9㎡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명당 수면실 면적 | 3.3㎡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.3㎡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.3㎡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설비         | 수면실, 사무실(상담실 겸용), 프로그램실, 의무실(100명 이상인 시설만 | 수면실, 사무실(상담실 겸용), 조리실, 화장실(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| 수면실, 사무실(상담실 겸용), 조리실, 화장실(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|
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| 해당한다), 조리실, 화장실(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), 급수·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| 야 한다), 급수·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| 야 한다), 급수·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비고

1. 상시 입소인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시설 면적은  $13.22\text{제곱미터} \times 100 + 13.22\text{제곱미터} \times 0.7(\text{입소정원} - 100)$ 으로 한다.
2. 시설이 특별시 및 광역시의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설치될 경우 위 표의 1명당 면적 기준의 70퍼센트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3. 남녀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, 시설의 설비와 구조는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의 성별 및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
4.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#### 다. 노숙인재활시설

| 구분              | 상시 30명 이상인 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시 30명 미만 10명 이상인 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시 10명 미만인 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입소정원 1명당 시설 면적  | 15.9m <sup>2</sup>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.9m <sup>2</sup>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3.22m <sup>2</sup>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입소정원 1명당 수면실 면적 | 5.0m <sup>2</sup>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.0m <sup>2</sup>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.3m <sup>2</sup>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설비              | 수면실, 사무실, 상담실, 의무실, 프로그램실, 공동작업장(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), 도서실 또는 오락실, 조리실, 목욕실, 화장실, 급수·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| 수면실, 사무실(상담실 겸용), 조리실, 화장실(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), 급수·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| 수면실, 조리실, 화장실(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), 급수·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|

비고

1. 입소정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시설 면적은  $15.9\text{제곱미터} \times 100 + 15.9\text{제곱미터} \times 0.7(\text{입소정원} - 100)$ 으로 한다.
2. 시설이 특별시 및 광역시의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설치될 경우 위 표의 1명당 면적 기준의 70퍼센트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3. 남녀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, 시설의 설비와 구조는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의 성별 및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
4. 정신질환자 및 알코올중독자는 구분하여 수용하고, 감염병환자는 격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.
5. 공동작업장은 시설에서 자활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설치하여야 한다.
6.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라. 노숙인요양시설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| 상시 30명 이상인 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시 30명 미만 10명 이상인 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시 10명 미만인 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입소정원<br>1명당<br>시설 면적  | 18.48㎡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8.48㎡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3.22㎡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입소정원<br>1명당<br>수면실 면적 | 6.6㎡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.6㎡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.3㎡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설비                    | 수면실, 사무실, 상담실, 의무실, 프로그램실, 공동작업장(10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), 도서실 또는 오락실, 조리실, 목욕실, 화장실, 급수·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| 수면실, 사무실(상담실 겸용), 조리실, 화장실(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), 급수·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| 수면실, 조리실, 화장실(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), 급수·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|

비고

1. 입소정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시설 면적은  $18.48\text{제곱미터} \times 100 + 18.48\text{제곱미터} \times 0.7(\text{입소정원} - 100)$ 으로 한다.
2. 시설이 특별시 및 광역시의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설치될 경우 위 표

의 1명당 면적 기준의 70퍼센트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3. 남녀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, 시설의 설비와 구조는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의 성별 및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
4. 정신질환자 및 알코올중독자는 구분하여 수용하고, 감염병환자는 격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.
5. 공동작업장은 시설에서 자활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설치하여야 한다.
6.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#### 마. 노숙인급식시설

- 1) 노숙인급식시설은 「식품위생법」 제8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집단급식소여야 한다.
- 2) 노숙인급식시설의 설치·운영 기준은 「식품위생법」 제88조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·운영 기준에 따른다.

#### 바. 노숙인진료시설

- 1) 노숙인진료시설은 「의료급여법」 제9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차의료급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차의료급여기관이어야 한다.
- 2)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·운영 기준은 「의료법」 등 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다.

#### 사. 쪽방상담소

| 구분    | 쪽방상담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시설 면적 | 92㎡(28평) 이상일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설비    | 상담실, 사무실, 화장실, 물품보관실, 급수·배수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|

비고: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#### 아. 노숙인종합지원센터

| 구분    |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시설 면적 | 특별시·광역시의 경우 132㎡(40평) 이상, 특별시·광역시 외의 지역은 92㎡(28평) 이상일 것 |
| 설비    | 상담실, 사무실, 의무실, 화장실, 물품보관실, 급수·배수시설                      |

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할 것

비고: 비상재해대비시설에는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소화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2. 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

| 구분       | 자격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시설의 장    | 가.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<br>나. 사회복지시설·사회복지단체의 부장급 이상 또는 사회복지행정분야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<br>다. 종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상담요원     | 가.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<br>나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1년 이상 상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생활복지사    | 가.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<br>나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, 심리학, 교육학, 여성학 또는 사회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(졸업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)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|
| 정신건강전문요원 |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비고

- 상담요원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한다.  
가. 입소자에 대한 상담(재활·자활·주거·고용 상담을 포함한다), 관찰 및 연고자 확인  
나. 상담 결과에 따라 입소자를 전원조치 대상자 및 장·단기 보호 대상자로 구분 관리  
다.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 
라. 상담일지 작성 및 관리
- 생활복지사는 매일 입소자의 건강 및 생활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-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, 작업훈련, 심리상담 및 간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3.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

가. 노숙인일시보호시설

| 구분    | 상시 50명 이상<br>이용시설 | 상시 30명 이상<br>50명 미만<br>이용시설 | 상시 30명 미만<br>이용시설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시설의 장 | 1명                | 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행정책임자             | 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| —                      |
| 상담요원              | 1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| 1명                     |
| 간호사 또는<br>간호조무사   | 1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| 1명                     |
| 생활복지사 또는<br>생활지도원 | 2명 이상<br>(50명 초과<br>이용자<br>25명마다 1명<br>추가) | 2명 | 1명<br>(상담요원이<br>겸직 가능) |
| 영양사               | 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| —                      |
| 조리원               | 2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명 | —                      |
| 사무원               | 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| —                      |
| 위생원               | 1명 이상<br>(50명 초과<br>이용자<br>50명마다 1명<br>추가) | 1명 | —                      |

비고: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다른 노숙인복지시설의 부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의 장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다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이 겸직할 수 있다.

#### 나. 노숙인자활시설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시 50명 이상<br>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시 30명<br>이상<br>50명 미만인<br>시설 | 상시 10명<br>이상<br>30명 미만인<br>시설 | 상시 10명<br>미만인 시설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시설의 장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              |
| 행정책임자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              |
| 상담요원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이상<br>(50명 초과<br>입소자<br>50명마다 1명<br>추가) | 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              |
| 간호사 또는<br>간호조무사<br>(입소자가 상시 | 1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00명 이상인<br>시설만 해당)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생활복지사<br>또는<br>생활지도원                    | 2명 이상<br>(50명 초과<br>입소자<br>25명마다 1명<br>추가) | 2명 이상 | 1명 이상<br>(상담요원이<br>겸직 가능) | 1명 |
| 영양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   | —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|
| 조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명 이상<br>(50명 초과<br>입소자<br>50명마다 1명<br>추가) | 2명    | 2명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|
| 사무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   | —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|
| 경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   | —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|
| 설비기사<br>(입소자가 상시<br>100명 이상인<br>시설만 해당) | 1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   | —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|

비고: 3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을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설의 장을  
갈음하여 상담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.

#### 다. 노숙인재활시설

| 구 분   | 상시 50명 이상<br>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시 30명<br>이상<br>50명 미만인<br>시설 | 상시 10명 이상<br>30명 미만인<br>시설 | 상시 10명<br>미만인 시설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시설의 장 | 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              |
| 행정책임자 | 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              |
| 상담요원  | 1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              |
| 생활복지사 | 1명 이상<br>(50명 초과<br>입소자<br>40명마다 1명<br>추가) | 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의사<br>(촉탁 의사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   | —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|
| 간호사 또는<br>간호조무사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   | 1명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|
| 정신보건<br>전문요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   | 1명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|
| 생활지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명 이상<br>(50명 초과<br>입소자<br>25명마다 1명<br>추가) | 2명 이상 | 1명 이상<br>(상담요원이<br>겸직 가능) | 1명 |
| 영양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   | —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|
| 조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명 이상<br>(50명 초과<br>입소자<br>50명마다 1명<br>추가) | 2명    | 2명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|
| 사무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   | —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|
| 경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   | —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|
| 설비기사<br>(입소자가 상시<br>100명 이상인<br>시설만 해당) | 1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   | —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|

비고

1. 위 표의 직종 외에 시설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배치종사자 정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생활복지사를 물리치료사의 직종으로 변경하여 배치할 수 있다.
2. 위 표의 직종 외에 시설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배치종사자 중 정신보건전문요원을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작업치료사의 직종으로 변경하여 배치할 수 있다.
3. 3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을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설의 장을 갈음하여 상담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.

라. 노숙인요양시설

| 구 분   | 상시 50명 이상<br>시설 | 상시 30명<br>이상<br>50명 미만인<br>시설 | 상시 10명<br>이상<br>30명 미만인<br>시설 | 상시 10명<br>미만인 시설 |
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시설의 장 | 1명              | 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행정책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   | —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|
| 상담요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   | 1명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|
| 생활복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이상<br>(50명 초과<br>입소자<br>40명마다 1명<br>추가)  | 1명    | —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|
| 의사<br>(촉탁의사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   | —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|
| 간호사 또는<br>간호조무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   | 1명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|
| 생활지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명 이상<br>(50명 초과 입소<br>자<br>25명마다 1명<br>추가) | 2명 이상 | 1명 이상<br>(상담요원이 겸<br>직 가능) | 1명 |
| 영양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   | —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|
| 조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명 이상<br>(50명 초과 입소<br>자<br>50명마다 1명<br>추가) | 2명    | 2명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|
| 사무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   | —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|
| 위생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이상<br>(50명 초과<br>입소자<br>100명마다 1명<br>추가) | 1명    | —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|
| 경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   | —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|
| 설비기사<br>(입소자가 상시<br>100명<br>이상인<br>시설만 해당) | 1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   | —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|

비고

1. 위 표의 직종 외에 시설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배치종사자 정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

생활복지사를 물리치료사의 직종으로 변경하여 배치할 수 있다.

2. 3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을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설의 장을 갈음하여 상담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.

#### 마. 쪽방상담소

| 구분    | 쪽방상담소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시설의 장 | 1명               |
| 행정책임자 | 1명(시설의 장이 겸직 가능) |
| 상담요원  | 2명 이상            |

비고

1. 시설의 장은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설의 장이 행정책임자를 겸직할 수 없다.
2. 쪽방상담소를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다른 노숙인복지시설의 부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그 상담소의 장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다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이 겸직할 수 있다.

#### 바. 노숙인종합지원센터

| 구분    | 노숙인종합지원센터 |
|-------|-----------|
| 시설의 장 | 1명        |
| 행정책임자 | 1명        |
| 상담요원  | 4명 이상     |
| 사회복지사 | 1명 이상     |

비고

1. 지역별로 노숙인 등의 수를 고려하여 시설의 장 1명, 행정책임자 1명, 상담요원 3명 이상, 사회복지사 1명 이상(1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중 1명은 행정책임자가 겸직 가능)으로 배치할 수 있다.
2. 상담요원은 주거전문 상담요원, 고용전문 상담요원, 일반 상담요원, 현장 상담요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.
3. 필요에 따라 상담요원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.

#### 4. 시설 운영의 기준

##### 가. 노숙인 등 관리기록

- 1) 입소시설 및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 신상기록카드(입소시설만 해당한다) 및 입소자 등 명부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- 2) 입소시설 및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요청할 때에는 노숙인 등 신상기록카드 또는 입소자 등 명부를 제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

##### 나. 급식위생

입소시설 또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의 급식

위생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1) 노숙인 등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작성·시행할 것
- 2)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되,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할 것
- 3) 감염병 또는 화농성 등의 질환을 가진 사람이 음식을 만드는 것을 금지할 것
- 4) 먹는 물로 상수도 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 분기 1회 이상 수질 검사를 받을 것

다. 사망자의 처리

- 1) 입소시설 또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노숙인 등이 해당 시설에서 보호 중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하고, 연고자에게 사망 일시 및 사망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및 「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라 처리한다.
- 2)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가목에 따라 사망자 처리를 하도록 지도·감독을 하여야 한다.

라. 금품의 보관 등

입소시설 및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노숙인 등을 해당 시설에서 보호할 때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소지한 금품을 보관해 주어야 하며, 노숙인 등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.

마. 장부 등의 비치

노숙인시설(노숙인급식시설 및 노숙인진료시설은 제외한다)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- 1)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
- 2)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
- 3) 시설 운영일지
- 4) 시설의 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부(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)
- 5) 예산서 및 결산서
- 6) 총계정원장 및 수입·지출보조부
- 7)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서류
- 8)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
- 9)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결의서류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- 10) 직원의 인사, 복무 및 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